

미국 오리건 주의 이혼전교육 참여자 사례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이혼전교육의 방향 모색

송 혜 림*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혼 전 숙려기간 도입, 이혼상담제도의 의무화 등과 관련, 이미 이혼 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 오리건 주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이혼전 교육의 체계와 내용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을 및 고령화와 함께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이혼율에 직면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원인을 분석해 왔다. 최근까지 논의되어 온 이혼 관련 대책이나 대응방안 등은 충동적 이혼 방지, 미성년자녀 보호, 이혼 후 생활에 대한 준비 및 전반적인 정보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다른 한 편으로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출발하였다는 비판 및 성인의 이혼에 대한 국가나 제도의 개입 자체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통합적 가정정책의 실현이라는 맥락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정에 접근하고자 200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에서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점, 이혼의사가 정해진 가족에게 자녀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 및 이혼한 가족에 대해 양육비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 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자칫 이혼에 대한 편견에 기초하여 무조건 이혼을 막아야 한다는 식의 발상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일단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정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이고도 이성적으로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관련되는 절차의 제도화 여부는 시민과 전문가, 정책입안자 간의 논의를 통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혼전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내용, 운영방안 등에 대한 미국 오리건 주의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 나라에서 이혼전 교육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도입될 경우 보다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미국 오리건 주의 경우 이혼전 교육을 판사의 직권 하에 권유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혼 전 교육에 참여했던 이혼당사자 6명을 면접, 이혼전 교육의 체계, 내용, 만족도와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이혼전 교육 자체는 대부분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그 내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주제가 포함되고 이혼 당사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시간, 장소 등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야 한다는 점, 미성년 자녀의 교육참가여부, 교육주체의 전문성과 신뢰성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심도깊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